

특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의의



서 천석
변리사, 변호사(미국)

1. 머리말

특허제도는 14세기 유럽대륙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와 함께 역사적으로 이태리반도의 선진 공업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본 고에서는 특허제도의 정립과 각국의 실정에 부합한 시행이 후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갈릴레이의 특허청원

인류 역사상 특허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는 베니스였는데, 다음 내용은 베니스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가 자신이 발명한 “양수(揚水), 관개(灌漑)장치”에 대해 당시 국왕에게 특허를 부여해 주도록 청원한 서신 중 일부이다.

“폐하, 저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매우 편리한 양수, 관개용 기계를 발명하였습니다. 즉, 단 한 마리의 말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 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이므로, 그 발명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을 수 없기에 삼가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중략) 저와 제 자식 및 그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제 발명품을 제작하거나, 비록 제작하였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모양을 바꾸어 물이나 기타의 재료를 써서 사용하는 것을 40년간 또는 폐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 내에는 허용치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폐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벌금에 처하여 제가 그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사회복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새로운 발명에 힘을 기울여 폐하께 충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상기 갈릴레이의 특허 청원서는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특

허제도의 의의와 동일하다. 즉, 위 청원서에서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특허출원 명세서), 특허발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특허제도의 취지) 및 보호방법(특허기간 및 특허침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3. 영국의 특허장 제도 및 전매조례와 산업혁명

14세기의 영국은 유럽 대륙에 비해 공업이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으며, 길드(Guild) 조직으로 인하여 외국인은 영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대륙의 발달된 상공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당시 국왕 Edward II세(재위 1307~1327) 및 Edward III세(재위 1327~1377)는 이른바 ‘부국강병’을 위하여 과감하게 ‘특허장(Letters Patent)제도’를 시행하였다. 동 제도에 의해 대륙의 선진기술자들은 영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상공업 수준이 점차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허장 제도는 Elizabeth 여왕(재위 1558~1603) 시대에 이르러 통치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왕실의 가신이나 충신에 대한 보상 및 왕실의 수입원으로 특허장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예컨대, Elizabeth 여왕은 기존의 기술(예: 트럼프) 또는 생활필수품(예: 소금, 올리브기름, 양초, 밀가루 등)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필품 가격이 하루 아침에 20배 가까이 폭등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특허장 제도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 하원은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에서는 일체의 독점은 무효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그 유일한 예외로서 진정한 최초의 발명에 한하여 국왕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전매조례가 갖는 의의는 단순히 현대적 의미의 ‘성문 특허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는데만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종래에는 일부 가신 및 귀족들만이 특허권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갈릴레이처럼 발명을 한다면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즉 “전국민의 발명인화”를 통하여 산업기술 중심의 부국강병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동안 대륙의 후진국이었던 영국에서 1710년

James Watt의 증기기관 발명에 의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한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사실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4. 미국 식민지정부의 특허제도

특허는 미국 식민지에서도 개별적으로 허여되었다. 초기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식민지정부들 역시 유용한 기술이 수입되는 것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영국의 특허장 제도), 발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독점권을 허여하였다(영국의 전매조례).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연방정부에 특허청이 생기고(1836년)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던 업무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연방특허제도 와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특허제도가 병존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주정부가 특정인에게 특허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발명자 서천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발명장려를 위한 법률(Act for the due Encouragement of Cheon-Seok Seo)”을 의회가 제정하는 방식이었다. 아마도 오늘날 매년 수만건의 특허 흥수 시대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특허등록증을 대할 때 갖는 느낌과는 사뭇 다른 벅찬 감격과 희열을 당시 발명자들은 만끽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특허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발명의 욕을 급속하게 고취시켜 마침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산업기술 대국으로 발돋움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5. 독일과 일본의 실용신안제도

독일은 통일되기 전까지 20여개 소국의 군웅할거 체제였으며 따라서 각기 독자적인 특허법을 가지고 있었다. 1871년 통일독일이 성립된 후 주(종래의 소국)와 주 사이의 상품교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종래의 특허제도였다.

다음의 글은 다국적 기업 지멘스 그룹의 창시자 Siemens (1816~1892)가 당시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게 통일특허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편지에 담긴 것이다.

“지금 독일의 공업은 전면적인 봉괴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공업에 관련된 모든 정신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술자는 아무런 사회적 명예나 발언권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명보호의 결여는 공업에 대한 연구·투자를 저해하여 발명자의 국외 유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유능한 기술자가 영국이나 미국, 기타의 공업국으로 도피하여, 그 결과 조국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상기 글은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오늘날 한국의 실상에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계기로 통일독일은 1876년 연방특허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Siemens가 상기 편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독일의 공업수준은 다른 열강에 비해 낙후한 수준이었으므로 특허제도가 자국민의 발명의욕을 크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국민의 발명의욕을 제고시킬 특단의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하게 된 것이 1891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실용신안제도이다. 이 제도는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에 버금가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독일 국민의 근면성과 결합하여 독일이 급속도로 공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후 20여년만에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일등 공업국이 된 것도 역시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대인 1721년 포고문에 의해 견직물·도구·서적은 물론 상품·과자류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후 1871년 및 1885년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오늘날 까지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전매특허조례는 독일의 통일특허법을 모방하여 시행하였으며, 독일이 실용신안제도를 창안해 낸 것과 유사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05년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다. 즉, 1885년 특허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일본인의 발명은 기술적 수준이 낮고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단순 개량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산업정책상 특히 소발명을 적극 보호·장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는 1980년까지 매년 특허출원 건수를 상회할 정도로 일본인으로부터 많은 애용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한 일본의 출원 건수는 미국의 출원 건수의 약 3배였다. 이 모든 것은 일개 약소국이던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6. 맷음말

이상에서 주요 선진국의 특허제도 발전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고찰해 보았다. 일국의 특허제도가 정립되는 데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좌우하였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자국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특허제도의 채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산업계 종사자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005년도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시길 기원하는 바이다.